

방사성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일본)

방사성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1957년 법률 제167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59호)이 1995
년 3월 31일부 관보(호의 제60호)에 공포되
었다.

그 「개요」와 개정된 조항의 부분을 소개
한다. 다만 개정내용의 하나인 방사성 동위
원소를 업으로 하는 자에 직접 관계가 있는
조문은 해당자가 반드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여 생략했다. 조문중에
서 밑줄을 그은 부분이 개정된 요소이다.

「개 요」

◇ 방사성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장
해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법률 제59호)

(과학기술청)

① 방사성동위원회를 업으로서 임대하려
고 하는 자는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한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
판매업자와 같은 취급을 하기로 하였다.(제4

조 제1항 등 관계)

② 사용시설 등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
는 허가사용자 등은 그 변경허가 신청시 허
가증을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하
였다.(제10조 제4항, 제11조 제4 및 제11조
의 2 제4항 관계)

③ 政令으로 정하는 표시부 방사성 동위
원소 장비기기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방사선취급 주임자를 선임하는 것 등을 의
무화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제20조 제
2항, 제22조, 제34조 및 제36조~제38조 관
계)

④ 기타 내용의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政令으
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注) 2는 허가증의 정정수속의 간소화이다.

변경허가 신청시에 허가증도 제출하여, 변경
허가와 동시에 정정후의 허가증이 사용자
등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현
행법령으로는 방사성 동위원회의 사용자 등
이 사용시설 등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변경허가가 된 후에, 별도로 허가증을 제출하여 허가증 정정신청을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간소화한 것이다.

「개정 조문」

(사용자시설 등의 변경)

제 10 조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허가사용자는 그 변경허가의 신청시에 허가증을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 ⑥ (생략)

(내부 교체시설 등의 변경)

제 11 조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 및 임대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함)가 동조 제2항 제1호에 제시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청 장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 성명 내지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을 했을 때 그 제출시에 허가증을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여, 정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②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제6호까지 제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청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그 변경허가 신청시에 허가증을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폐기시설 등의 변경)

제 11 조의 2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폐기업자는 그 변경허가 신청시에 허가증을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측정)

제 20 조 ①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장해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방사선의 양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상황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설, 내부교체시설, 폐기물교체시설, 저장시설, 기기설치시설(정령에 정하는 표시부 방사성동위원소 장비기기만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함.) 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에 출입한 자에 대해 그 자가 받은 방사선의 양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상황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전2항의 측정결과에 대해 기록의 작성, 보존, 기타 총리부령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사선장해 예방규정)

제 21 조 ①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내지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내지 임대업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사물의 폐기업을 개시하기 전에, 방사선장해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과학기술청 장관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폐기업자에 대해 방사선장해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③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가 방사선장해 예방규정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청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훈련)

제 22 조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사용시설, 내부교체시설, 폐기물교체시설, 저장시설, 기기설비시설 (정령에 정하는 표시부 방사성 동위원소 장비기기만을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함.) 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장해 예방 규정의 주지, 기타를 도모하는 외에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베풀어야 한다.

(건강진단)

제 23 조 ①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총리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시설, 내부교체시설, 폐기물교체시설, 저장시설, 기기설치시설, 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전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해 기록의 작성, 보존, 기타의 총리부령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장의무)

제 25 조 ① 사용자는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기에 관한 사항
 - (2)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 (3)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사물의 폐기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
- ②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총리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임대, 보관 또는 폐기기에 관한 사항 및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제시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 ④ (생략)

(양도, 양수 등의 제한)

제 29 조 방사성동위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양수, 임대, 임차되어서는 안된다.

- (1) 허가사용자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내지 폐기업자에게 양도, 내지 임대, 또는 그 허가증에 기재된 저장시설의 저장능력 범위내에 양수 내지 임차할 경우
- (2) 제출사용자가 제출한 표시부 방사성동위원소 장비기기에 장비되어 있거나 또는 장비되어 있었던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내지 폐기업자에 양도내지 임대하거나 또는 제출한 표시부 방사성동위원소 장비기기에 장비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양수 내지 임차할 경우 또는 제출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내지 폐기업자에게 양도 내지 임대하거나, 또는 제출한 저장시설의 저장능력 범위내에 양수 내지 임차할 경우

(소지의 제한)

제 30 조 방사성동위원소는 법령에 의거한 장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해서는 안된다.

- (1) 허가사용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그 허가증에 기재된 저장시설의 저장능력 범위내에 소지하는 경우

제 4 장 방사선취급 주임자

(방사선취급 주임자)

제 34 조 ① 사용자 (정령에 정한 표시부 방사성 동위원소 장비기기만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함. 이하 이 장에 있어서도 같음.),

방사성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일본)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대한 감독을 시키기 위해 총리 부령에 정한 구분에 의해 다음 조 제1항의 제1종 방사선취급 주임자 면허장 또는 제2종 방사선취급 주임자 면허장을 가진 자 중에서 방사선취급 주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 방사성동위원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진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방사성 동위원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약사법(1960년 법률 제45호)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의 제조소에서 사용할 때는 약제사를 각각 방사선취급 주임자로 선임할 수가 있다.

② 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가 방사선취급 주임자를 선임했을 때는, 총리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뜻을 과학기술청 장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해임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제 7 장 별칙 (이에 관한 별금액의 개정도 있었지만 생략)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 2 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방사성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 있어 「新法」이라 함.)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4항 및 제11조의 2 제 4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허가신청을 하는 허가사용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폐기업자에 대해 적용하며 동일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방사성 동위원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을 한 허가사용자, 판매업자 및 폐기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 3 조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과학기술청 설치법의 일부개정)

제 4 조 과학기술청 설치법 (1956년 법률 제4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12호 중 「판매」 밑에 「및 임대」를 추가한다.

유의점

① 방사성동위원회의 임대업을 하는 자로부터 방사성동위원회를 임차할 시에는 제29조에 정한 바 있는 (양도, 양수 등의 제한)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정령에 정한 표시부 방사성 동위원회 장비기기만의 사용자에 대해 방사선취급 주임자의 선임의무, 교육훈련의 실시의무, 측정의 실시의무는 면제되었지만 방사선 예방 규정의 제출, 기장의무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藤田 稔)